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6 - 13 - 048호

안 건 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16. 3. 10.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과태료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 조사대상 기간('15.7.1.~'16.1.31.)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155개의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행위사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에 추가로 15를 더한 금액 보다 더 많은(즉 그 금액을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지원금')을 지급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2월 2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은 (i)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ii)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리점·판매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실조사 등)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각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III. 시정조치 명령

1.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침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침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6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3.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침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장에 게시한 공표문의 사진 제출 등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IV. 과태료 부과

피침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라 피침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2.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에 대하여는 위반 건수가 2건 이상인 점 등의 사유로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다만, 피심인의 대표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2급 장애인인바,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침인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1,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500,000원) 및 50%를 감경한 금액(-500,000원)을 합한 1,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결론

상기 피침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침인은 위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침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 원 장 최 성 준



부위원장 김 재 홍



위 원 김 석 진



위 원 이 기 주



위 원 고 삼 석

